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2012. 7. 13

국 무 총 리 실　교육과학기술부　행 정 안 전 부

지 식 경 제 부　조 달 청　중소기업옴부즈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현황 및 문제점 ····· 3

Ⅲ.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 6

Ⅳ. 중점 추진과제 ····· 7

〈개별 인증규제 개선〉

1. 부처별 인증제도의 중복성·불합리성 개선 ·····7

〈국가 표준·인증제도 개선〉

2.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현 ·····9

3. 기업·소비자 중심의 시험인증체계 구축 ·····11

〈중기 전략 : 글로벌 표준강국 추진 방안〉

4. 글로벌 통상시대 표준·인증 대응체계 조성 ·····14

5.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인프라 구축 ·····16

Ⅴ. 기대효과 ····· 18

Ⅵ. 실천계획 ····· 19

[별첨] 1. 지경부 소관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개선과제(134건)

2. 중소기업 인증애로 개선과제(34건)

Ⅰ. 추진배경

1 표준·인증의 개념 및 역할

1 **[개념] 표준**이란,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상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합의절차를 거쳐, 표준화기관에 의해 승인된 규정

* 제정주체에 따라 **국제표준, 지역표준(유럽 EN), 국가표준(KS)**, 단체표준으로 구분

구분	표준명	분야	회원국 수	보유규격(개)	담당부처
국제표준	ISO(국제표준화기구)	일반	163	19,023	기술표준원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전기전자	81	6,513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통신	191	3,914	방송통신위

○ **기술기준**이란, 시험인증 등 규제에 활용되는 표준

○ **인증**(認證)이란, 제품 등이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평가·증명

* (사례) **KC인증(우리나라), CE인증(EU), UL인증(미국), CCC인증(중국) 등**

2 **[기능]** 국가·국제규범으로서 산업경쟁력 향상 및 무역 원활화

○ **(산업화)** ① 호환성 제고, ② 복잡성 저감, ③ 품질향상, ④ 효과적인 정보전달 등 국가 기술인프라 기능을 통해 산업 경쟁력 향상

* 표준이 매년 25억파운드(4조 6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영국 DTI(통상산업부), '05)하고, 노동생산성에서 17% 성장을 이끈 것으로 조사(캐나다 SCC(표준화기관), '07)

호환성	복잡성 저감	품질유지	정보제공
			
Hi-Pass	부품 통일화	형광등(>8,000hr)	공공안내 그림표지

○ **(글로벌화)** WTO·FTA 체계에서 국가간 상품·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기준에 국제표준 채택을 의무화

* 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의 영향 아래 유통(OECD)

2 표준·인증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공적기능 강화]**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제정된 표준을 강제 법령 및 인증기준에서 활용함으로써 규제 저항을 낮추는 정책 도구로 활용

○ 국가차원에서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증기준(표준-기술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중복규제 방지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EU) CE마크('93), (중국) CCC마크('02), (일본) PS마크('03)

○ 시험인증기관을 인정하는 기구를 단일화하고 제품 시험결과를 공유하는 국제상호인정체제 확대(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 복수 인정기구를 운영하던 이태리·독일('09) 및 EU('10)가 단일화 완료
* 국제상호인정체제 : ('00) 28개국 38개 기관 → ('11) 61개국 73개 기관

2 **[통상 이슈화]**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선진국·개도국 모두 무역기술규제(시험·인증)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시험인증시장 확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표준을 기반으로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를 강화하여 무역기술장벽(TBT)으로 활용

* WTO TBT(무역기술장벽) 통보문 추이 : ('05) 771건 → ('08) 1,251건 → ('11) 1,217건

○ 글로벌 시장교류 확대 및 각국의 기술규제 증가로 세계 시험인증 시장(100조원)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으로 급성장 추세

3 **[시장지배력 심화]** 표준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어 세계시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시험인증체제 확대

○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표준화 및 인증체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개발을 할 경우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기업의 손실 초래

* 교통카드 단말기 개발시 표준(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06년 국가표준 제정 후 표준화된 호환성 단말기 교체로 570억원 추가 소요

○ 국제기구는 국제표준을 활용한 경영인증체계를 확대하고 기업과 시험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추세

*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ISO 20000(IT서비스경영) 등

Ⅱ. 우리나라 표준·인증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표준·인증 운영체계 단일화 시급

❑ **(표준 이원화)** 국가표준이 표준(KS)과 각 부처 기술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운용되어 기업이 지켜야 할 유사 규제들이 증가

* KS(24천종, 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기술기준(23천종, 19개부처 개별법률)

○ 동일한 제품(가구 등)에 부처별 상이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운영하여 업계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국가 컨트롤 타워 부재

< 유사·중복 표준-기술기준 운용 사례 >

유사·중복 유형	사례
표준 -기술기준간	(환경) 환경부(기술기준) VS 기표원(KS) 유사규격 148종 운영 (자동차) 국토부(기술기준) VS 기표원(KS) 유사규격 22종 운영 (의료기기) 식약청(기술기준) VS 기표원(KS) 유사규격 17종 운영 등
기술기준 -기술기준간	(정보기기) 국제표준 25종을 기표원 및 방통위 기술기준으로 중복 도입운영 (가구) 붙박이 가구(국토부) 및 이동식 가구(기표원) 기준치·시험방법 각각 운영 등

○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은 인증 기준으로 활용되어 표준-기술기준 부조화는 인증시험 중복문제를 발생시켜 기업에 이중 부담

❑ **(인증 중복)** 매년 유사 인증제도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여 112개의 법정인증제도(의무 43 + 임의 69)와 73개의 민간인증제도가 난립 운용 중

* 최근 4년간 법정 인증제도가 17% 증가 : ('07) 96개 → ('11) 112개

○ 기업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의무인증)하거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임의인증)를 받기 위해 다수의 인증을 획득

* 기업이 인증 받는데 연 4조원을 쓰고(국내외 인증)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 인증을 보유하고 이를 취득·유지하는데 연간 3,230만원 소요(대한상공회의소, '10)

< 동일한 제품에 대한 다수의 인증획득 사례 >

품목	인증 종류	분야
LED 조명	K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KS	안전/환경
가스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KS, 신기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마크	안전/환경
안동 간 고등어	수산물품질, 지리적표시등록, 수산물이력품질등록, KS, 식품 HACCP, 안동시 인증	수산물
안성사과	우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이력추적등록, 경기GD마크	농산물

2 글로벌 통상시대 표준·인증 대응체계 부재

❑ **(해외시험인증)** 최근 EU·미국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국가 등도 신규 시험인증제도를 도입, 우리 수출업계에 부담 증가

* (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동남아) 철강, 타이어 등에 강제인증 도입 등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시험인증규제 현황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 수출국가의 인증요구 등 기술규제를 알지 못해 납기 지연 또는 계약 취소 발생

○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시험인증규제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컨설팅 할 수 있는 TBT(무역기술장벽) 전문가 부족

* 무역기술장벽 전문가는 이공계 지식을 바탕으로 통상 및 법률 지식 필요

❑ **(인증산업 경쟁력)** 글로벌 교역 증대 및 시험인증규제 증가로 세계 시험인증시장은 급성장 추세이나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경쟁력은 미약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규모영세, 전문인력 부족, 시장확보 애로 등으로 우리나라 시장 2조 6천억원의 51%를 글로벌 기관이 점유

*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1,600여개, 종사자수는 4만명 정도이고 기관당 평균 종사자수는 24명, 평균 매출은 약 8억 2천만원으로 영세

○ 글로벌 경쟁력이 미약한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필요

* 주요국 시험인증산업 GDP내 비중 : 독일(0.52%), 프랑스(0.32%), **한국(0.16%)**

< 주요 다국적 및 국내 시험인증업체 현황('09) >

기관명	매출	종업원 수	배수*		해외지사 수
			매출액	인력	
다국적 A사	5.2조원	5만 9천명	17	21	1,000여개
다국적 B사	4.8조원	4만명	16	14	900여개
다국적 C사	3.5조원	3만 2천명	11	10	600여개
국내 7대 시험인증기관	0.3조원	2천 8백명	1	1	7개
국내 1,600개 시험인증기관	1.3조원	3만 7천명	4	13	-

* 국내 7대 시험인증기관 매출액 및 인력 대비 배수

3 글로벌 지식재산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인프라 미흡

❑ **(국제표준 선점)** 우리제품의 시장 선점으로 연결될 국제표준 제안은 총 450건이며 '07년 이후 5년간 325건(전체의 72%)을 차지함

* 국가별 순위(최근 5년 기준)는 ISO에서 10위, IEC에서 4위(일본 122건, 독일 102건, 미국 76건, 한국 74건)로 예측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여 아직까진 국내 원천기술을 국제표준화 한 실적은 저조

* ISO(국제표준화기구)/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표준 2만여종 중 우리 기술을 제안·채택된 표준은 109종(ISO 73종, IEC 36종)에 불과('11)

○ 민간 표준전문가는 하나의 국제표준을 위해 수년간 활동하고 있으나 기관·개인 평가에 표준화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활동 제한요소로 작용

* 통상 국제표준이 완성되기까지 2~5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과 인력 및 비용 소요

❑ **(표준외교 역량)**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의장/간사/컨비너) 수임현황, 정회원율, 분담금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순위는 10위 수준

○ 국제표준 개발 과정을 주도할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 간사수는 ISO에서 12위(17명), IEC에서 9위(5명)임

<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의장/간사/컨비너 수임 현황('11.12월)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TC/SC)	우리나라		
		의장(비율)	간사(비율)	컨비너(WG)
ISO	736 (224/512)	13명(1.8%)	17명(2.3%)	59
IEC	177 (97/80)	3명(1.7%)	5명(2.3%)	17

○ 중남미, 아프리카 등 표준체계 부재(미비)로 우리 기업이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신흥국에 우리 표준·인증체계 보급 필요

*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 **신흥국:('95)31%→('11)51.1%,** EU:('95)14.3%→('11)10%, 미국:('95)9.3%→('11)10.1%

Ⅲ.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글로벌리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선진화

목 표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한 2조달러 무역대국 활로 구축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규범 를 메이커로 도약

중점 추진과제

개별 인증규제 개선	1 부처별 인증제도의 중복성·불합리성 개선
국가 표준·인증제도 개선	2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현 3 기업·소비자 중심의 시험인증체계 구축
중기 전략 : 글로벌 표준강국 추진 방안	4 글로벌 통상시대 표준·인증 대응체계 조성 5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인프라 구축

Ⅳ.중점 추진과제

Ⅰ 개별 인증규제 개선

◈ 全부처 개별 인증제도의 중복성 및 비합리성을 조사·발굴하여 중복해소, 인증 기간 및 비용 단축 그리고 규제 합리화 추진

1 부처별 인증제도의 중복성·불합리성 개선

【 개별 인증규제 개선추진 현황 】

▷ 처음으로 全부처의 인증제도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덩어리 규제를 일괄 개선 추진('11년하)

* 지경부 기술표준원, 조달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증애로 발굴(bottom-up)과 함께 제품별 인증기준 검토(top-down) 병행 추진

▷ 중복적/불합리한 인증규제 4대 유형(①중복해소, ②기간 단축, ③비용경감, ④규제합리화)에 대해 168건[별첨 참조]의 개선안 마련

* 중소기업 간담화공청회(4회), 설문조사(441개사), 현장조사(300개사), 관계부처 협의(17회) 등

○ **(중복해소-138건)** 인증제도간 138건의 중복해소를 통해 비용절감 257억원, 매출액 증대 2,099억원

- 지경부 소관 복수인증 품목 134건의 중복시험 상호인정에 따른 비용절감 204억원, 매출액 증대 2,099억원(제품별 평균 130만원 절감, 22일 단축)

* 추진일정 : LED 등기구 등 84개 KC-KS 중복시험 품목은 '12.6월 완료, 김치냉장고 등 50개 가스·에너지·고효율-KS 중복시험 품목은 '12.12월까지 조치

< 사례 : 컨버터 내장형 LED >

제품	현 황(시험항목)				개 선(기대효과)	
	KS인증	KC인증	중복	→	기간(일)	비용(만원)
	17	10	7	→	120→100	284→114

- 그 밖에 환경부, 농림부 등 4건의 중복규제 개선으로 비용절감 53억원

- 인증제도간 중복 해소를 지속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법정인증 운영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기준 단일화 및 유사인증 통합 추진('12~)

○ **(기간단축-7건)** 시험/심사 지연으로 적기 생산·판매에 저해되는 인증 7건 절차 간소화 등 추진

- 인증 절차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61억원, 매출액 증대 149억원

< 사례 : 임플란트 >

제품	현 황		개 선
	▶ 임플란트 업체 S사는 허가-인증 등으로 개발 후 시판까지 2년 소요 - 의료기기 품목허가(9개월 소요) : 기술문서+안전성·유효성자료 - 요양급여평가(11개월 소요): 요양(보험)급여대상 여부 결정	→	▶ 요양급여평가시 유사제품, 최저가 제품 등은 Fast-Track 추진 - **기간 : 11개월 -> 100일 (법정)**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12하)

○ **(비용경감-12건)** 과도한 시험비용, 불합리한 관리수수료 징수 등 12건의 비용부담 완화

- 인증 비용경감에 따른 비용 절감 188억원

< 사례 : 발전기 >

제품	현 황		개 선
	▶ 발전기제조업체 S사는 40억원 매출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품질관리수수료 963만원 납부('11)	→	▶ 우수조달물품 **수수료 29% 인하** - 해외판로지원 확대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확대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관 개정('12.7)

○ **(기타 규제합리화-11건)** 인증품목의 지나친 세분류, 인증가수요 유발제도, 공급자 중심의 기준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 11건 개선

- 인증 합리화에 따른 비용 절감 685억원, 매출액 증대 824억원

< 사례 : 문구류 및 공인시험성적서 >

제품	현 황		개 선
[클리어 파일 20p/40p] 	▶ 문구류 제조업체 A社는 시리즈 모델에 대해 파생모델로 인정해 주지 않아 별도의 환경표지 취득	→	▶ 문구/가구류 등 113개 품목군의 기본-파생제품 범위 재검토, 파생제품 10% 확대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13)
	▶ 공인시험성적서의 용도표기로 타부문 활용 불가 및 인증기관에서 관행으로 6개월 미만 시험성적서 요구	→	▶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용도표기 삭제, 합리적인 유효기간 명시 *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개정('12하) * 부처 인증포럼, 인증기관 세미나를 통해 개선안 시달('12하)

II 국가 표준·인증제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의 통합·효율화

⇒ 국가표준정책 방향 통일화, 기술기준-표준(KS)의 조화로 기업이 준수할 규범 축소

◈ 시험인증제도의 단일화를 통한 중복 해소로 기업부담 완화

2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현

1 국가표준(KS) 행정체계 개편

【 국가표준 행정체계 현황 】

▷ 부처의 표준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표준 총괄·조정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국가표준정책이 어렵고 부처간 갈등 빈번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부처별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범부처가 다함께 참여하는 국가표준(KS) 운용체계로 개편

- 국가표준(KS) 중 환경·의료·교통 등 각 부처 소관분야는 관련 부처에서 KS를 개발·운영하는 범부처형 KS 운용 체계 마련

 * KS 개발·운영 참여 부처 수요조사 및 협의(기술표준원, '12)

 * 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의거 식품분야 KS(472종) 관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위탁된 것처럼 같은 수준의 위탁을 타부처로 확대('13)

○ **(부처협업 내실화)** 부처간 표준정책 방향 통일화 및 갈등 조정

-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한 국가표준심의회의 부처 표준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이슈별 국가표준실무위원회 內 소위원회 운영('12~)

 * 국가표준 총괄기관(기술표준원) 및 국가표준심의회를 기반으로 국가표준 총괄·조정 체계 구축

2 기술기준의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 검토

【 표준-기술기준 운용체계 현황 】

▷ 부처 기술기준 및 관련 법령 제·개정시 표준과의 연계 미흡으로 유사·동일분야에서 표준과 기술기준이 중복 도입·운용

* EU 및 미국은 각각 New Approach 지침(법) 및 국가기술이전촉진법(NTTAA)에 의거 기술기준에서 표준 인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표준-기술기준의 이원화 방지

○ **(기술기준-표준 조화)** WTO 등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표준(ISO/IEC/ITU 등) => 표준(KS) => 기술기준 구조를 통해 부처 기술기준에서 표준(KS)을 인용

- 각 부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관리·운영하면서 기술기준에서 표준(KS) 인용현황을 매년 국가표준심의회에 보고('13~)

 * 부처 기술기준에서 표준 인용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국가표준기본법 개정, '13)하고 부처 기술기준에서 표준 인용현황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반영·공표

○ **(중복성 사전 검토)** 각 부처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시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및 표준 인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 신설

- 총리실에서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관련 법령 등을 규제심사 할 때 필요시 중복성 여부를 점검 실시

 * 총리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13.1월)



3 기업·소비자 중심의 시험인증체계 구축

【 법정 시험인증제도 운영 현황 】

▷ 「국가인증제도혁신 추진계획('06.5)」에 따라 5개 부처 13개 법정 의무 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 하나로 통합·시행('11.1)



⇒ 시험인증기관 인정제도가 부처별로 다르고 유사 시험인증제도 신설 증가로 중복 시험 및 복잡한 인증절차에 따른 기업 부담 여전

* 인정(認定) : 독립된 기관(인정기구)이 시험인증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입증

1 KOLAS(한국인정기구) 범부처 확대

○ **(범부처 협력)** 범부처 국제상호인정제도 운영을 통해 인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기관 및 기업의 이중부담 경감

- 우리 기업이 국내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수출국가에서도 통용되도록 국제상호인정이 가능한 KOLAS(한국인정기구)의 범부처 확대

* 「시험인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가칭)」 제정(기표원, '13)

* 현행 KOLAS 참여부처 : 7개 부처 26개 법령('12.1)

《 KOLAS(한국인정기구) 개요 》

-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제 MRA(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시험·검사·교정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국제인정기구협의체의 우리나라 인정기구
- **공인기관 인정 : 658개 기관**[시험(403), 검사(46), 교정(192), 표준물질(9), 메디컬(8)]
- **국제 MRA 체결 현황** : ILAC 61개국 73개 인정기구('11년 기준)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2 법정 임의인증(KS)의 절차 간소화 및 강제인증(KC) 체계 개선

○ **(KS 인증)**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KS 인증절차 및 인증체계를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전환 추진

- 단기적으로 인터넷 신청서비스, 공장심사일수 단축, 시험검사설비 외주관리 허용 및 경영책임자 교육 폐지 등 KS 인증 절차 개선 추진

 * KS 인증절차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인 산업표준화법 및 KS 인증기준 개정('12~)

 *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 부담이 1/2이상 감축되는 효과 기대

- 장기적으로 현행 하나의 인증기관(표준협회)을 다수로 확대하고 시험기관(13개)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KS인증에 경쟁체제 도입('15)

< KS 인증제도 주요 개선(안)>

항목			개선내용	효 과
단기 개선 ('12)	신청 전	-컨설팅비용(500~800만원) - KS인증 처리기간(40일)	온라인 KS인증시스템구축	-컨설팅비용 절감(**무료** 자가진단) -처리기간(40일 → **30일**)
	신청 후	품질 교육 CEO	16시간(2일) → **폐지**	-교육비(126만원 → **69만원**)
		품질 교육 품질관리	20시간(3일) → **16시간(2일)**	-교육시간(56시간 → **36시간**)
		심사 일수 1품목	2일 → **1일**	- 1품목당 64만원 절감 (178만원 → **114만원**)
		심사 일수 2~3품목	3일 → **2일**	
		시험·검사설비 의무 구비	모든 시험·검사설비 외주 관리 허용	- 고가 시험·검사설비 자체 구비 부담 해소(**530억원 절감**)
		제품심사 효율화	KS-KC 동일품목 중복시험 면제(84품목, 592업체)	-시험 비용·시간 축소 (품목당 200만원 절감, 30일 단축)
		1년주기 제품심사대상	('07)132개 → **('12)85개**	-매년 제품심사비용 절감
장기개선 ('15까지)		KS인증 경쟁체제 도입	인증기관(표준협회)→ **다수** 시험기관(13개) → **추가확대**	- 업계선택 폭을 넓히고 비용절감 유도

○ **(KC 인증)** 기업주도로 전환하면서 사전규제 강도*를 낮추는 대신 사후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리콜제도)으로 단계적 전환('13 ~ '15년)

* 사전규제 강도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 안전·품질표시

- 제품의 시장진입 지연 해소 및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유통하는 '안전·품질표시' 품목 확대(미EU 수준)

 * 지경부 관리대상 358품목 : 안전인증(135), 자율안전확인(135), 안전·품질표시(88)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판품 조사 확대등 시장감시기능 강화에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13년 예산 반영)

 * 시판품 조사, 위해정보센터 등을 통해 판매중단 권고, 제품 리콜, 소비자 사용주의 공표 등

3 인증제도의 중복성 사전방지 및 관리강화

○ **(중복성 사전심의)**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기존 인증제도와 유사성을 검토하여 중복제도 운영 방지 추진

- 인증 도입 시 지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중복성 및 국제기준과의 부합성 등을 심의·조정(국가표준기본법 개정, '13)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인증) 개정>

대 상	현 행		개 정
법정 임의인증 신설 시	지경부장관에게 통보 –	➜	지경부장관과 협의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법정 의무인증 및 마크제도 도입 시	지경부장관과 협의 –	➜	(좌동) 국가표준심의회 심의
기존 법정인증 관리	(없음)	➜	운영실적 연1회 보고

○ **(제도관리 강화)** 현행 법정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인증제도 정비 추진

- 현행 112개 법정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실적을 매년 국가표준심의회에 보고(국가표준기본법 개정, '13)

 * 법정 인증제도 및 인센티브 운영 부처를 국가표준심의회 참여부처에 포함

-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을 조달청의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조달 인센티브 제도 개선

 * 매년 인증제도별 인센티브(조달청 가점 등)를 심의·조정하고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는 조달시장 등에서 퇴출(국가표준심의회 상정 검토 '12~)

○ **(표준·인증 포털)** 국가 표준·인증 정보를 single window에서 제공하고 관련 민원을 one-stop 처리하는 표준·인증 포털 구축

- 수요자(정부, 기업, 소비자)가 원하는 표준(24천종), 기술기준(23천종), 인증(185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상호 연계시스템 구축

 * 기술기준에 인용된 표준이 개정·폐지되는 경우 기술기준에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인증정보를 인증기준(표준–기술기준)과 연계하여 제공; 민간인증(73개)은 정보만 제공

- 인증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인증관련 全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처리

 * 행안부 전자정부사업을 통해 표준인증 포털 구축 추진(150억원, '13~'16년)

III 중기 전략 : 글로벌 표준강국 추진 방안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해외 시험인증규제 대응체제 구축
◈ 기술표준·시험인증제도를 국가적 지식재산으로 육성

4 글로벌 통상시대 표준·인증 대응체계 조성

1 해외 시험인증규제 대응체계 강화

【 해외 시험인증규제 현황 】

▷ WTO·FTA 등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데 반해, 시험인증 등 비관세조치를 통한 무역장벽이 높아져 수출기업 부담으로 작용

* 무역기술장벽(TBT)은 업종에 따라 6~30% 관세율에 상당(Ecorys, 2009)

○ **(정보 제공)** 주요국 시험인증규제 최신 동향을 신속 입수하여 수요자(수출기업 등) 요구에 맞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

* TBT 포털(www.knowtbt.kr)을 「TBT 종합정보허브」로 개편하여 단순 규제 동향을 제품을 기반으로 한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12~)



○ **(대응 지원)** 해외 기술규제 동향조사·심층분석·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TBT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출기업의 TBT 발굴 및 해소

- 시험연구기관, 기업, 통상 전문가 등으로 「TBT 지원단」 양성(14년까지 200명)

 *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또는 주요대학 국제대학원 등의 교과 과정에 반영

○ **(국제 협력)** WTO 또는 FTA TBT 위원회 등 국가간 공식 무역기술장벽(TBT)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

* TBT 질의처(기표원, 농림부, 복지부) 및 관련 부처와 운영위 개최 정례화(연 3회 이상)

②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시험인증산업 현황 】

▷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필요

* 국내 1위 KTL(산업기술시험원) 매출 및 인원(890억원, 705명)은 세계 1위 스위스 SGS(5.2조원, 59천명) 매출의 1.7%, 인원의 1.1%에 불과

○ **(역량 강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하고, 신수요분야 R&D-시험인증 연계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프라 구축

- R&D를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시험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중소시험인증기관에 TP 및 출연연구기관 첨단장비 공동 활용 지원

* 장비공동활용 기반구축('12.10) 및 국제상호인정시험기반구축사업(75억원/'12년) 확대 등

* 국제표준(ISO/IEC)에 대한 시험인증수준 : 글로벌 기관(80%), 우리기관(43%)

○ **(경쟁구조 전환)** 정부 시험인증수요에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는 공공 시험인증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민간기관의 공공분야 진입 여건을 조성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대형화·글로벌화를 유도하고, 법정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진입장벽을 해소

* (사례) 6개 시험인증기관을 3개 기관(한국화학융합(화학+전자파), 한국기계전기전자(기기유화+전기전자), 한국건설생활환경(건자재+생활환경)) 시험연구원으로 자율통합('10.7))

○ **(신규시장 확대)** 신수요 글로벌 시험인증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개도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컨설팅 기관으로 육성

- 신성장동력분야(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의 국제표준 및 R&D와 연계하여 신규 시험인증시장 선점

* 풍력설비 인증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립하여 IEC 표준으로 채택추진('12.하반기)

-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 규모, 기술력,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호인정협정 추진('12~)

*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국가간 MRA 추진

5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인프라 구축

①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 기술개발-표준·인증 연계 현황 】

▷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국제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 조성 필요

* 개발기술이 표준화 되지 않으면 다른 표준기술과 호환이 되지 않아 시장에서 사장(死藏)

○ **(R&D-표준 동시개발)** IT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R&D 수행시 표준특허 획득 및 국제표준화, 시험인증을 동시 추진

* 현재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지경부 일부에서만 적용하는 국가 R&D-표준화 동시 연계 사업을 전부처로 확대하고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에 반영·이행('13~)

○ **(중소·중견기업 특화)**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 중 표준특허 및 표준화 필요성이 도출된 경우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

* 개발 기술의 표준화 연계 사업은 기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13)

-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인증(NEP)·신기술인증(NET) 중 표준특허 창출 및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표준화 추진

○ **(표준인증 활동 지원)** 표준·인증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개인별/기관별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지표에 표준화·인증활동 실적을 추가

* 특허, 논문뿐 아니라 표준도 성과로 인정되도록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표준성과지표'에 표준을 반영하고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정('12)

-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표준화 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가점 부여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 과제 선정의 우대·감점기준 개정('13)

○ **(지식 재산화)** 원천기술 표준 및 인증제도의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여 국부를 창출하는 주요 국가 지식재산으로서의 위상 부여

- 국내 주요 인증제도(NEP, NET, KS 인증 등)의 글로벌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인증 브랜드로 육성

* 지식재산 기본계획(5년) 및 실행계획(매년)에 표준 및 시험인증 분야 반영·추진('13~)

2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

▷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책위 활동은 일정수준 성과가 있으나, 국제표준 반영의 핵심인 의장·간사 수임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저조

* ISO/IEC 간사수임 현황 : 獨 175명, 美 143명, 佛 97명, 英日 91명, 中 53명, **韓 22명**

▷ 국제표준화기구 이외에 IMO(국제해사기구),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 범부처가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참여 필요

○ **(국제표준화·인정기구 활동 강화)** 원천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제안을 늘리고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간사수 확대

* 국제표준(ISO/IEC 등) 누적제안 목표 : 450건('11) ⇒ 730건('15)
* ISO/IEC 간사 목표 : 17명/5명('11, 12위/9위) → 26명/7명('15, 7위/7위)

- 안정적인 국제표준 활동 지원을 위해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7번째 상임이사국(현행 6개국 : 美, 獨, 日, 英, 佛, 中) 진출 추진('15)

* 분담금, 기술위 정회원수 확대 등을 통한 평가순위 상향 및 국제회의 유치 확대

-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의체)·IAF(국제인정포럼) 등 시험인증 분야 국제상호인정기구에서의 활동 강화를 통해 국제인정시스템 주도

* ILAC·IAF 총회 개최('13.10월, 인천 송도, 60여개국 300여명 참석)

○ **(전략적 표준·인증외교)** 국제표준화기구 개별 회원국의 지지(1국가 1투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채널 다각화 추진

- 대륙별 거점기구 및 주요국별 표준협력을 병행 추진하고 개도국에는 우리나라의 표준 발전 노하우를 교육·전수

* 아프리카남미 등에 우리 표준 및 시험인증 발전 노하우를 교육하는 사업 추진('12~)

○ **(국제기구 활동강화)**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룰 메이커 역할 필요

- 국제기구의 국제표준 제정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응 강화

* 주요 국제기구 동향정보 교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신설·정례화('12~)

Ⅴ. 기대효과

1 국가 표준·인증제도 선진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 인증중복 해소 및 인증수수료 감소 등을 통해 8,200여 개 중소기업에 연간 1,200억원의 직접적 비용경감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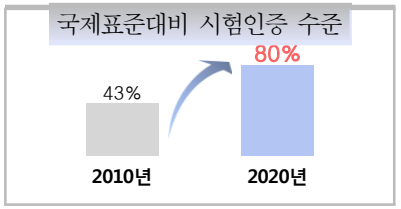
- 인증기간 단축을 통한 매출증대 간접효과 포함시 연간 4,300억원 절감효과

구 분	개선과제 건수	예상 경제적 효과(억원)		
		소계	비용 경감	매출 증대
중복해소	138	2,356	257	2,099
기간단축	7	210	61	149
비용경감	12	188	188	-
기타 규제합리화	11	1,509	685	824
소 계	168	4,263	1,191	3,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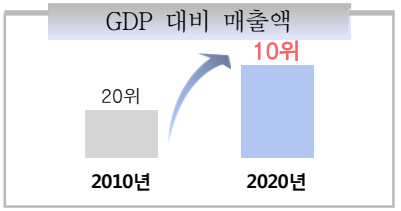
2 글로벌 표준강국 추진을 통한 기여 효과

○ 시험인증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육성시켜 '20년까지 GDP내 비중을 0.16%에서 0.4%로, 고용규모를 4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

<시험인증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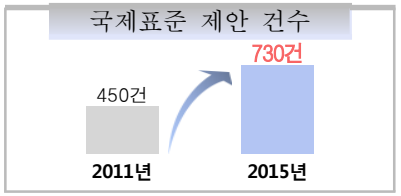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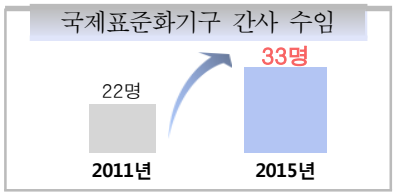


○ 우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해 2015년 세계 7위의 국제표준 리더로 도약

<국제표준 선점>



<국제표준화 활동>



Ⅵ. 실천계획 (Action Plan)

추진 과제		주관부처	추진일정
1 부처별 인증제도의 중복성·불합리성 개선		중기옴부즈만실	'12.12
2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현			
① 국가표준(KS) 행정체계 개편		지경부(기표원)	'12.12
② 기술기준의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 검토			
·기술기준-표준 조화(법 개정/행정조치)		지경부(기표원)	'13~
·중복성 사전 검토(행정조치)		국무총리실	'12.8
3 기업·소비자 중심의 시험인증체계 구축			
① KOLAS(한국인정기구) 범부처 확대		지경부(기표원)	'13
② KS의 절차 간소화 및 KC 체계 개선		지경부(기표원)	'12~'15
③ 인증제도의 중복성 사전방지 및 관리강화			
·중복성 사전심의(법 개정)		지경부(기표원)	'13
·제도관리 강화	인증운영실적보고(법개정·행정조치)	지경부(기표원)	'13
	인증인센티브 개선(행정조치)	조달청	'12.12
·표준·인증 포털(행정조치)		행안부	'12~'16
4 글로벌 통상시대 표준·인증 대응체계 조성			
① 해외 시험인증규제 대응체계 강화		지경부(기표원)	'12.12
②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경부(기표원)	'12~'20
5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인프라 구축			
① 원천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R&D-표준 동시개발(행정조치)		관계부처	'13~
·중소·중견기업 특화(행정조치)		지경부(기표원)	'13
·표준·인증 활동 지원(행정조치)		교과부·국과위	'12
·지식 재산화(행정조치)		지재위	'13
②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지경부(기표원)	'12~15

별첨 1 지경부 소관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개선과제 (134건)

○ (추진현황) 기술표준원 소관 KC-KS간 중복시험 상호인정품목 84개 품목의 KS 심사기준 개정을 완료

- 가스용품검사·에너지소비효율등급·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과 KS 인증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품목 50개의 심사기준 개정 추진 중('12)

○ (기대효과) KC-KS 중복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평균 400만원에서 188만원으로 53%, 소요기간은 평균 94일에서 63일로 33% 경감됨

- 가스에너지·고효율-KS간 중복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은 평균 523만원에서 285만원으로 46%, 소요기간은 평균 92일에서 50일로 46% 경감 예상

※ KS-KC 상호인정시 경제적 효과(제품 평균값)

구 분	상호인정 前			상호인정 後			경감량
	KC	KS	합계	KC	KS	합계	
수수료 (만원)	119	281	**400**	119	69	**188**	△212 (△53%)
소요기간 (일)	45	49	**94**	45	18	**63**	△31 (△33%)

※ 가스·에너지·고효율-KS간 상호인정시 경제적 효과(대표 3개 제품 평균값)

구 분	상호인정 前			상호인정 後			경감량
	가스고효율 등	KS	합계	가스고효율 등	KS	합계	
수수료 (만원)	264	259	**523**	264	21	**285**	△238 (△46%)
소요기간 (일)	47	45	**92**	47	3	**50**	△42 (△46%)

* 대표 3개 제품 : 무정전 전원장치, 가스레인지, 가스온수보일러

※ 법정 인증제도 중복시험 상호인정 총 기대효과

구 분	상호인정 품목(개)	수혜업체(개)	비용절감액(억원)	소요시간 단축(일)
기표원KC-KS	84	1,006	**195.8**	284,446
가스용품검사-KS	14	37	**0.1**	358
에너지소비효율등급-KS	21	266	**1.7**	2,410
고효율에너지-KS	15	530	**6.3**	20,706
소계	134	1,839	**203.9**	307,920

○ 지경부 인증제도간 상호인정 대상 품목(134개)

① 기술표준원 KC-KS 간 상호인정 대상 품목(84개) : 기조치

연번	품 목	중복항목/ 全시험항목	기대효과					
			수수료(만원)			기간(일)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1	나트륨램프	10/19	424	18	-406	120	20	-100
2	네온변압기	13/17	67	20	-47	30	20	-10
3	메탈할라이드램프	10/19	424	18	-406	120	20	-100
4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14/16	120	20	-100	40	20	-20
5	고압수은램프	12/20	424	18	-406	120	20	-100
6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26/30	260	42	-218	30	15	-15
7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	21/33	564	101	-463	45	15	-30
8	교류입력방전램프용 전자식안정기	5/10	280	196	-84	30	20	-10
9	무정전 전원장치	2/71	388	386	-2	80	77	-3
10	형광램프 홀더	13/17	216	35	-181	40	20	-20
11	저독성난연폴리올레핀전력케이블및절연전선	15/16	283	1	-282	30	1	-29
12	영화비닐절연케이블제3부:배선용절연전선	16/17	157	1	-156	30	1	-29
13	영화비닐절연케이블제4부:배선용시스케이블	27/28	353	1	-352	42	1	-41
14	영화비닐절연케이블제5부:유연성비닐케이블	23/24	290	1	-289	43	1	-42
15	영화비닐절연케이블제6부:비닐리프트케이블	24/25	354	1	-353	48	1	-47
16	영화비닐절연케이블-제7부:비닐절연유연성케이블	30/31	516	1	-515	51	1	-50
17	고무절연케이블제4부:고무코드및유연성케이블	18/21	364	32	-332	37	10	-27
18	고무절연케이블제5부:고무리프트케이블	20/23	405	32	-373	39	10	-29
19	고무절연케이블제6부:아크용접용케이블	16/19	402	32	-370	52	14	-38
20	고무절연케이블제7부:내연성에틸렌비닐	13/15	169	12	-157	28	12	-16
21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제1부 : 케이블	27/28	474	1	-473	45	1	-44
22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27/30	553	101	-452	50	20	-30
23	메탈할라이드 램프용안정기	27/30	553	101	-452	50	20	-30
24	삼상 복권 건식 소형 변압기	15/18	125.8	3.6	-122.2	26	4	-22
25	가정용 소형 전구	3/12	127.9	122.3	-5.6	107	100	-7
26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12/13	333	20	-313	40	20	-20
27	천정 매입형 백열등 기구	1/11	54	47	-7	40	35	-5
28	매입형 LED 등기구	8/23	357	79	-278	120	20	-100
29	형광램프	8/17	514	83	-431	120	100	-20
30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8/13	284	114	-170	120	100	-20
31	안정기 내장형 램프	12/20	133	61	-72	120	30	-90
32	디지털도어록	16/24	227	103	-124	28	20	-8

연번	품 목	중복항목/ 全시험항목	기대효과					
			수수료(만원)			기간(일)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33	물탱크	2/11	170	22	-148	65	28	-37
34	자동차용 타이어	5/5	93.6	0	-93.6	15	0	-15
35	고압수은램프용안정기	20/22	58	14	-44	30	10	-20
36	전기로스터	22/32	221	65	-156	49	23	-26
37	기타꽂음접속기	6/17	116.1	81	-35.1	34	23	-11
38	누전 차단기	31/32	509	1	-508	60	1	-59
39	옥내용 소형 스위치	7/18	111	73	-38	30	25	-5
40	배선용 차단기	8/9	193	158	-35	30	25	-5
41	전기면도기	22/33	272	116	-156	50	19	-31
42	전기 토스터	24/29	223	37	-186	44	10	-34
43	건전지(망건건전지)	4/10	543.2	530.6	-12.6	64	60	-4
44	자동차용브레이크액	33/37	133.5	18	-115.5	30	7	-23
45	자동차부동액	37/37	137.2	0	-137.2	45	0	-45
46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31/31	34	0	-34	7	0	-7
47	벽지 및 종이장판지 / 벽지	3/8	136	20	-116	30	15	-15
48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7/18	58.6	51.4	-7.2	15	13	-2
49	유모차	11/12	39.5	16.7	-22.8	10	10	0
50	휴대용사다리(주택용사다리)	6/6	93.7	0.5	-93.2	10	1	-9
51	전기납땜인두	18/23	184	39	-145	33	5	-28
52	전기다리미	22/32	226	51	-175	48	16	-32
53	휴대용전기그라인더	24/26	108	39.3	-68.7	40	7	-33
54	휴대용전기드릴	24/26	108	39.3	-68.7	40	7	-33
55	모발건조기	27/29	221	7	-214	40	2	-38
56	전기밥솥	17/40	191	55	-136	40	18	-22
57	가정용소형변압기	15/18	125.8	3.6	-122.2	26	4	-22
58	선풍기	24/29	226	40	-186	40	5	-35
59	전기스토브	23/30	225	54	-171	44	12	-32
60	전기오븐	26/31	229	48	-181	45	11	-34
61	전기온수기	26/37	813	612	-201	66	29	-37
62	전기장판	26/30	312	130	-182	44	7	-37
63	전기담요	26/32	327	146	-181	47	10	-37
64	전기보온밥솥	25/31	200	9	-191	47	11	-36
65	전기믹서 · 전기주서	21/30	197	44	-153	44	11	-33
66	전기 탈수기	29/29	306	75	-231	42	5	-37
67	가정용조리기구(핫플레이트)	23/26	200	16	-184	38	4	-34
68	전자레인지	21/30	233	136.3	-96.7	54	24	-30
69	김치냉장고	21/32	251	82	-169	50	12	-38
70	전기세탁기	18/31	283	137	-146	47	17	-30

연번	품 목	중복항목/솔시험항목	기대효과					
			수수료(만원)			기간(일)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71	전기 진공 청소기	26/29	530	355	-175	49	17	-32
72	공기청정기	21/32	268	31	-237	36	3	-33
73	전기포트	27/30	228	21	-207	38	6	-32
74	환풍기	25/27	199	9	-190	38	2	-36
75	일반용 자전거(이륜자전거)	3/4	220	0	-220	30	0	-30
76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4/11	79	0	-79	30	0	-30
77	자동차용 휴대용 잭	1/8	25	15	-10	15	10	-5
78	조속기	3/7	87.4	70	-17.4	90	45	-45
79	완충기	2/4	84.6	76.2	-8.4	90	45	-45
80	가스미터	11/17	412	84	-328	120	30	-90
81	오일미터	15/15	830	0	-830	50	0	-50
82	승차용 안전모	7/8	66.6	8	-58.6	10	7	-3
83	할로겐 전구			불일치				불일치
84	가정용 냉장기기			규격폐지				규격폐지
계			21,333.5	5,440.8	-15,892.7	4,010	1,421	-2,589
평 균			260.2	66.4	-193.8	48.9	17.3	-31.6

② 가스용품검사-KS인증(14개) : '12하

연번	품 목	중복항목/솔시험항목	기대효과					
			수수료(만원)			기간(일)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1	가스레인지	6/37	54	35	-19	54	41	-13
2	가스오븐레인지	1/28	63	59	-4	45	44	-1
3	가스오븐	1/28	44	40	-4	25	24	-1
4	가스온수보일러	1/31	491	475	-16	90	89	-1
5	가스난로	1/51	72	64	-8	45	44	-1
6	가스온수기	8/36	57	15	-42	45	35	-10
7	가스그릴	4/25	52	34	-18	30	27	-3
8	일반용LPG압력조절기	1/15	51	39	-12	30	29	-1
9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압력조정기	1/14	51	47	-4	30	29	-1
10	용접절단기용압력조정기	1/9	51	47	-4	30	29	-1
11	금속플렉시블호스	8/44	45	18	-27	25	20	-5
12	상업용 가스 국솥	1/24	50	42	-8	30	29	-1
13	상업용 가스 부침기	1/23	50	42	-8	30	29	-1
14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	1/30	50	42	-8	30	29	-1
계			1,131	999	-182	509	469	-40
평 균			84.4	71.4	-13	38.5	35.6	-2.9

③ 에너지소비효율등급-KS인증(21개) : '12하

연번	품 목	중복항목/솔시험항목	기대효과					
			수수료(만원)			기간(일)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1	전기진공청소기	1/21	145	130	-15	40	39	-1
2	안정기 내장형 램프	4/20	26	13	-13	15	14	-1
3	형광램프용안정기	1/58	26	21	-5	10	9	-1
4	전기세탁기	2/33	250	225	-25	50	48	-2
5	선풍기	3/30	95	66	-29	40	38	-2
6	가스온수보일러	3/63	81	41	-40	45	40	-5
7	김치냉장고	1/38	150	139	-11	50	49	-1
8	전기냉방기	4/46	170	90	-80	40	35	-5
9	백열전구	3/16	45	25	-20	50	47	-3
10	형광램프	3/16	32	18	-14	15	12	-3
11	전기냉난방기	6/46	300	180	-120	60	50	-10
12	전기밥솥	1/9	120	108	-12	30	29	-1
13	상업용전기냉장고	3/20	250	185	-65	50	45	-5
14	가스온수기	2/16	170	148	-22	30	28	-2
15	변압기	2/19	138	123	-15	30	28	-2
16	창 세트	2/10	367	355	-12	59	56	-3
17	전기온풍기	2/29	150	107	-43	45	40	-5
18	제습기	2/12	150	120	-30	45	42	-3
19	전기장판	1/4	95	85	-10	40	39	-1
20	전기냉장고	1/10	150	139	-11	50	49	-1
21	전기냉동고	1/10	275	264	-11	55	54	-1
계			2,910	2,318	-592	794	737	-57
평 균			151.7	123.0	-28.7	40.4	37.7	-2.7

④ 고효율에너지-KS인증(15개) : '12하

연번	품 목	중복항목/솔시험항목	기대효과					
			수수료(만원)			기간(일)		
			전	후	증감	전	후	증감
1	열회수형 환기장치	3/18	414	314	-100	80	70	-10
2	무정전전원장치	34/36	245	183	-62	70	64	-6
3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3/20	349	335	-14	90	89	-1
4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3/20	349	335	-14	90	89	-1
5	LED 교통 신호등	5/22	211	153	-58	90	84	-6
6	단상 유도전동기	1/6	42	17	-25	30	28	-2
7	환풍기	1/18	485	405	-80	60	53	-7
8	메탈할라이드 램프	2/19	88	80	-8	30	29	-1
9	기름 온수 보일러	2/13	120	110	-10	30	29	-1
10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2/11	322	311	-11	120	30	-90
1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4/11	224	221	-3	120	30	-90
12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3/19	280	277	-3	100	99	-1
13	LED 보안등기구	6/23	290	160	-130	100	80	-20
14	LED 센서 등기구	1/19	108	107	-1	20	19	-1
15	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2/20	108	106	-2	20	19	-1
계			3,527	3,008	-519	1,030	793	-237
평 균			242.3	207.6	-34.7	70	54.1	-15.9

별첨 2 중소기업 인증애로 개선과제 (34건)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1 중복해소 : 4건	
1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간 심사항목 중복 개선** *(현황) 인증 공장심사 항목이 50% 수준 중복 *(개선) ① HACCP이 강도 높은 위생안전 기준임을 감안하여,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시 HACCP과 중복항목 심사면제 * 작업장, 용수관리, 개인위생, 환경위생 심사결과 상호인증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2하) ② 전통식품품질인증 시판품 조사주기 완화(연2회→1회) * 우수식품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고시) 개정('12하)	농림부 식품산업과 식약청 식중독예방 관리과
2	**폴리에틸렌 수도관 중복인증 심사항목 개선** *(현황) 환경부 위생안전기준인증, 기표원 KS인증과 상하수도협회 단체표준간 심사항목 중복 *(개선) ①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단체표준 중복시험 면제 * 단체표준 심사기준 개정('12하) ② KS인증제품과 단체표준 인증제품 중복시험 상호면제 * 폴리에틸렌 수도관(KSM 3408-2) 심사기준 개정('12상) ③ KS인증시 1년 이내 성적서 제출시 동일시험 항목 면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12하)	기표원 에너지환경 표준과 표준기획과
3	**탄소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중복인증 개선** *(현황)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중복 및 인증 수수료 과다 *(개선) ① 환경·탄소성적표지 상호인정 방안 마련 후 제도개선('13) ② 파생제품 심사일수 조정('12상) 및 사전검증제 도입('12하)을 통해 탄소성적표지 수수료 인하 *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에 관한 운영세칙('12상),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수수료,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13)	환경부 기후변화 협력과, 녹색기술 경제과
4	**다수업종 식품위생교육 중복 면제** *(현황) 다수업종 영위업체도 매년 동일한 교육을 업종별로 별도이수, 사업자 부담 심화 * 식품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개선) 동일 장소 다수업종 영위업체가 교육을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식품위생교육지침 개정('12하)	복지부 식품정책과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2 기간단축 : 7건	
1	**보험대상 치료재료 의료기기 심사지연 개선** *(현황) 치료재료(요양급여) 심사기간(6개월)이 길어 신제품 개발에 장애, 의료기기 품목허가(3개월)와 중복 *(개선) Fast-Track 심사(단순평가 제품)를 신설하여 법정 처리기간 단축(150일→100일) * Fast-Track 대상 : 동일목적 유사재료 제품, 최저가 신청제품 등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12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2	**HACCP 운영 관련 서류 부담 완화** *(현황)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 운영서류 작성항목이 많아 업계 인력·비용 부담 상당 * HACCP 관리팀 : 운영서류 기록, 최소 2-3명, 연간 7천만원 소요 *(개선) ①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비치시 선행요건관리 기준서 작성의무를 배제 ② 정기검사 우수 업체에 대하여 자체평가 허용, 기술지원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12상)	식약청 식중독예방 관리과
3	**특수의료장비 중복검사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현황) 특수의료장비 검사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가 중복되고, 설치 후 사용허가 처리기간이 1달 소요 *(개선) 특수의료장비 장비 신규설치 소요기간 단축 및 중복 검사항목 조정 * 특수의료장비 검사업무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특수의료장비 관련 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12하)	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4	**원료의약품 신고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처리기간 단축** *(현황) 원료의약품 안전성 자료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기간 지연(총 5~6개월 소요, 법정 처리기간 4개월) *(개선계획) 안전성 자료제출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출자료 간소화 및 법정기한 내 처리율 제고 * 원료의약품 신고지침 관련 해설서 마련('12.10월)	식약청 의약품안전 정책과 허가심사 조정과
5	**중소기업 성능인증 심사기간 단축** *(현황) 현재 처리기간이 30일이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적합성 심사 등)로 3개월 내외 소요 *(개선) 법정 처리기간에 적합성 심사기간을 포함하여 60일로 단축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12.9월)	중기청 공공구매 제도과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6	**우수조달물품 재지정 절차 간소화** *(현황) 우수조달물품 재지정 절차로 인하여 타 인증 취득 비용 및 행정부담 발생 *(개선) 지정기간 연장 시 별도의 인증갱신 없이, 1년 이내 발행된 공인시험성적서로 인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고시) 개정('12하)	조달청 우수제품과
7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장소 확충** *(현황) 교육장소가 교통안전 교육센터(상주)로 한정되어('09년 이후), 타 권역 참가자 교육 불편 및 비용 야기 *(개선) 수도권 교육과정 개설('12.11월) 및 현 상주 교육장 교육시간 조정(9시→11시)하여 교육 편의성 제고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3 비용경감 : 12건		
1	**소방용품 형식승인제품 검사비용 차등 인하** *(현황) 생산제품에 대한 샘플 검사 후, 수수료는 전체생산량에 부과하여 대량생산업체 부담 심화 *(개선) ① 생산제품검사 신청개수에 차등 비례하여 최대 20% 감면 * 수수료 할인율 : 1~22백개 미만(0%), 22백개~66백개 미만(10%), 66~225백개 미만(15%), 225백개 이상(20%) *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12하) ② 생산·품질제품검사 수수료 할인폭 확대 및 현실화 *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개선방안 연구('12하)	소방청 소방산업과
2	**우수조달물품 품질관리 수수료 차등 인하** *(현황) 우수제품협회가 우수물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품질관리 수수료를 징수(0.225%),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 과도 *(개선) 체감인하요율 적용, 매출액 기준 최대 29% 인하 * 수수료 : 3천만원 미만(0.225%), 30백만원~50백만원 미만(0.2%), 50백만원~1억원 미만(0.18%), 1억원 초과(0.16%)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정관 개정('12.7월)	조달청 우수제품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3	**소규모 사업자 환경표지 사용료 부담 완화** *(현황) 환경표지 제품 매출 규모별로 연간 사용료 부담 * 사용료 : 10억 미만(50만원), 10억~50억 미만(140만원), 50억~1백억(3백만원), 1백억~5백억 미만(4백만원), 5백억 이상(5백만원) *(개선)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사용료 경감 비율(10~30%) 확대 *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12하)	환경부 녹색기술과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4	**KS인증 1년 제품심사 지정품목 축소** *(현황) KS 인증기간(3년)내에서 매년 제품심사를 하는 품목이 85개에 달해(인증건수의 41.6%) 업계 비용 및 불만 상당 * 품목수(85개, 10.6%), 실공장 수(1,456개, 23.3%), 인증건수(4,277개, 41.6%) *(개선) ① 심사 1회 적합시 차회 심사를 면제하여 심사비용 경감 ② 1년 제품심사 지정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12하)	기표원 표준기획과
5	**KS인증 공장심사일 단축을 통한 수수료 인하** *(현황) 공장심사는 품목별 심사기간이 길어, 다수 품목 인증기업의 공장심사 수수료 부담 과다 * 수수료 : 기본료 이외 심사원 2인의 심사 수당, 교통비, 심사일 등을 가산 * 심사일 : 1품목(2일), 2품목(3일), 3품목 (3일), 4품목(3일), 5품목 이상(4일) *(개선) 공장 심사일을 품목당 1일 이하로 단축 * 1품목(1일), 2~3품목 (2일 이하), 4품목 이상(3일)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운영요강 개정('12하)	기표원 표준기획과
6	**KS인증 품질관리 의무교육 부담 완화** *(현황) CEO, 경영간부, 실무자에 대한 품질관리 의무교육으로 중소기업 인력공백 발생, 생산 효율성 저해 * 교과내용 : KS인증제도의 동향·쟁점, 국가표준시책 등 *(개선) CEO(2일) 교육 전면폐지 및 경영간부 교육대상을 품질경영간부로 한정하여 교육시간 단축(20시간→16시간)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KS운영요령 및 공장심사 보고서 개정('12하)	기표원 표준기획과
7	**KS인증 제품심사용 제품 준비개수 축소** *(현황) 제품심사 제품 준비개수(약20개 이상)가 과도, 선주문 방식의 제품 생산업체 재고비용 상당 *(개선) 총 시료수의 3배 이하로 제품 준비개수 축소 * KS인증 제품심사원 교육('12.5월)	기표원 신산업표준과
8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시험 및 정기검사 간소화** *(현황)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 유사한 제품이라도 별도 인증, 인증비용 가중, 매년 정기검사 부담 *(개선) 1회 정기검사 합격시 차회 검사 면제('11.10월), 정기검사 미적용 대상품목 33종 확대(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12.1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1하)	기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9	**K마크인증 사후관리비 인하** *(현황) 연간 매출액에 연동하여 사후관리비를 부담하나, 실질적인 사후관리 내용이 없음 * 사후관리비 : 20억 이하(2백만원), 20~50억 이하(3백만원), 50~1백억 이하(5백만원), 1백억~5백억 이하(7백만원), 5백억~10백억 이하(9백만원), 1천억 초과(11백만원) *(개선) 재계약시 수수료를 매년 20% 삭감하고, 최대 50% 인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품인증매뉴얼/K마크 인증업무 절차서 개정(12.7월)	산업기술시험원 품질인증센터
10	**섬유·가죽제품 안전·품질표시 비용 합리화** *(현황) 안전·품질표시는 강제표시이나, 시험기관별로 자율 운영되고 있어, 시험비용 및 소요기간 부담 심화 *(개선) 재시험 진행시 시험항목을 축소하여 비용을 인하하고, 시험기관별 비용 동일화 추진('12하)	기표원 생활안전과
11	**건축자재 납품업체 품질시험·검사비 부담 개선** *(현황) 품질관리 검사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나, 건설자재 납품업체에 시험·검사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개선) 품질관리는 발주자 책임임을 행정지도하고, 품질 관리비 집행실태 조사 후, 문제 발생시 법령 개정 추진 * 건설공사장 품질관리비 집행실태 조사(12.8월)	국토부 건설안전과
12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 축소 및 검사수수료 인하** *(현황) '00년 이전 의료기기 허가제품(2,445개)에 대해 재평가로 업계 재평가 비용 부담 상당 *(개선) ① 재평가 대상에서 1등급 의료기기 제외(111개, 4%) ② 의료기기 재평가 시험기관 검사수수료 10% 인하('12.7월)	식약청 의료기기 정책과
4 기타 규제합리화 : 11건		
1	**환경표지 제품군 및 파생제품 범위 확대** *(현황) ① 가구류의 경우, 제품군 분류가 세분화되어 유사제품이 별도로 인증을 취득, 가구업계 불만 고조 ② 기본제품에 비해 인증부담이 적은 파생제품 범위가 협소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유지 비용 상당 * 기본제품(8,134개, 29.4%), 파생제품(19,529개, 70.6%) * 파생제품 :인증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하게 디자인 또는 색상, 판매처 등의 변화로 상표명이 변경되는 경우 *(개선) ① 가구류 유사 대상제품 기준 통합(11개 → 6개, '12.7월) ② 문서파일, 비누, 태양전지 등 파생제품 범위 확대(10개, '12.7월) ③ 기본/파생제품 범위 재검토(113개 품목), 파생제품 10% 확대('12하)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13)	환경부 녹색기술 경제과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2	**공인시험성적서 통용기간·범위 확대** *(현황) 각종 인증 신청, 제품 개발, 납품 확인시 잦은 공인시험 성적서 요구로 업계 성적서 의뢰·발급 부담 과다 *(개선)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용도표기를 삭제하고 합리적인 유효기간을 명시(6개월 → 최대 4년)하여 활용범위를 확대 *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개정('12하) * 부처 인증포럼, 인증기관 세미나 등에서 개선안 시달('12.하)	기표원 적합성평가과
3	**결정질 태양전지 유사모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요건 간소화** *(현황) 부품재료 중 일부만 변경되어도 유사모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업계 부담 과다 *(개선) 셀 제조사 인수·합병 변경시 설비인증(성능검사) 면제, 유사모델 인증요건 간소화 방안 연구('12하)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에너지관리공단
4	**이동식배치플랜트 레미콘 KS인증 공장요건 합리화** *(현황) KS인증은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 이동식(해상·현장) 배치플랜트 업체는 인증 취득 불가 *(개선) 이동식배치플랜트 설치 레미콘 생산업자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선 * KS인증 심사기준 개정('12.7월)	기표원 주력산업 표준과
5	**중소기업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 개선** *(현황) 적합성 심사기준이 정성적이어서 평가 신뢰성 및 기업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적합성 심사 : 성능인증 대상여부, 기술적 기술성, 적용성, 발전성, 파급성, 기존제품 및 동종업계 제품 대비 성능에 대해 심사 *(개선) 성능차별화, 향후 발전성 및 파급성 등을 고려 지적재산권, R&D수준 등 정량 지표 도입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12.9월)	중기청 공공구매 제도과
6	**환경표지 사후관리 절차 개선** *(현황)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후관리 대상 선정기준이 비공개되어 있어, 제도 투명성이 떨어짐 *(개선) 업체 사전 통보 후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12년)하고, 사후관리대상 선정기준을 명시하여 공지('13년)	환경부 녹색기술 경제과
7	**고효율에너지인증 품목확대 절차 및 심사항목 개선** *(현황) 인증 품목확대 절차가 공단 운영요령으로 운영되어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심사항목이 중복·과다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순번	과제 개요	소관부처
	*(개선) 품목확대 절차를 보완하여 법규 명문화하고, 인증 품목 필수측정항목 재검토하여 축소 * 검사항목 간소화 검토 및 필수측정항목 재검토('12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13상)	
8	**단체표준 표시인증 설비사용계약 의무화 개선** *(현황) 단체표준 인증시 시험검사설비 사용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검사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음 *(개선) 설비사용계약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 구조용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의 검사설비 관리기준 개정('12.6월)	기표원 표준기획과
9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인증 인센티브 합리화 및 계약기간 연장** *(현황) 다수공급자계약(MAS) 심사시 '(해당 인증 보유수)/품목수'로 배점 부여, 계약업체 인증 가수요 유발 *(개선) ① 인증점수를 인증품목 비율 대신 인증개수로 평가하거나, 분야별 하나의 인증으로 만점 부여 ② 계약기간을 연장(1년→1.6년)하여 계약·시험부담 경감 *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12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10	**요화학분석기와 소변검사시험지 복합 판매 허용** *(현황)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의료기기)와 소변검사 시험지(의약품) 복합 구성 판매 불가 *(개선) 요화학분석기와 소변검사시험지가 복합 구성된 제품을 의료기기로 제조판매 허가 * 의료기기 허가절차 마련('12.7월)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11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차등화** *(현황) 특수의료장비는 전체 장비에 대해 정기검사(1회/3년, 68만원 내외)가 실시되어 검사비용 부담 심화 *(개선) 우수업체 검사 인센티브(검사주기 확대 등) 제공, 내구연한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주기 차등화 * 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3상), 특수의료장비 검사 업무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특수의료장비 관련 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13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